

#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

## I. 보수교육

### 가. 보수교육 이수시간

#### (1) 이수 기준 및 미이수 시 추가 이수

-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,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로 처리함
-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전년도의 미이수로 발생한 보수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,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

### 나. 보수교육 실시

- 보수교육은 의료법을 준용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총괄 관리하되,
  - \*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는 아니지만,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인/의료기사가 중앙회 및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협회에서 실시
- 내실있는 보수 교육을 위해, 집체교육시 협회에서 직접 실시하는 비율보다 전문단체, 의협, 병협, 중병협 등에 위탁 실시하는 비율을 높게하여 운영
  - \* 간호조무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관 특성에 맞게 보수교육을 운영하도록 위탁실시 활성화
- 간호조무사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되, 협회와 사전에 협의 후 인정
-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신청시, 어떠한 경우(협회비 미납 포함)에도 보수교육을 제한할 수 없음

## 다.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

(1) 협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,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

\*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

## 라. 보수교육 면제·유예 대상

### (1) 취지

- 기존의 보수교육 면제대상자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면제 대상 및 유예대상으로 구분

### (2) 보수교육 면제 대상(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준용)

-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(재발급자는 제외함)
-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

### (3) 보수교육 유예 대상(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준용)

- 해당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\*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
-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

\* (보수교육 유예 대상자) :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, 특정 사정(질병 등)으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를 원하는 자임

### (4)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·유예 인정 절차

-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, 협회에 “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서” 및 관련 서류\*를 제출

\* 관련서류 예시 : 간호조무사 자격 발급 신규자(자격증 사본)

-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,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매년 면제·유예 신청을 해야 함
- 보건복지부장관이 “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” 또는 “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”는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·유예 대상자를 분류함
- 협회장은 면제·유예 대상자임을 확인한 때,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

## 마. 보수교육 비용 및 수수료 산정

### (1)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\*를 부과

- \* 보수교육 실비: 교육 직접비용(강사료, 교재비, 교육장소 임차료 등)과 간접비용(보수교육 부서 운영비, 보수교육 상근담당자 인건비 등)을 일컬음

△ 협회 회비와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

△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 보수교육 간접비\*에 대해서만 추가 부과 가능

-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동일\*하게 부과 하되,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추가 부과 가능
- \* 협회비 납부 회원에게 보수교육 직접비를 할인하는 방식 등을 포함하여 직접비를 차등하는 것은 모두 불인정함
-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

### (2) 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

### (3) 보수교육 면제·유예 확인서 발급 시 별도 수수료 비용 책정 불가

## II. 행정사항

### 가. 시도

- 시도지사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수교육 관리 철저

### 나. 대한간호조무사협회

#### (1) 보수교육 내실화 등

- (보수교육 강화) 감염예방, 의료법령·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는 보수교육 강화
- (아동학대 신고)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간호조무사의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(아동복지법)
- \* 신고전화 1577-1391(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)
- (회당 교육인원 제한) 1회 최대 교육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여 보수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

## (2)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 보고 : 보건복지부, 시도

### ○ 보수교육 계획

- 보수교육 실시기관, 교육과목 및 내용, 교육방법(집합·사이버 등), 교육 예산 및 피교육자 경비 부담액 등 작성
- 연중 보수교육계획은 각 협회 보수교육 홈페이지에 별도 메뉴로 구성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중 게시

### ○ 보수교육 실적 보고

- 보수교육 이수자 수, 당초 제출한 계획 대비 변경사항 등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 결과를 매년 4월말까지 제출

## (3) 유의 사항

### ○ 보수교육 비용을 협회 예산과 분리하여 구분 계리

### ○ 기타 유의사항

- 시도, 병(의)원과 협조하여 의료기관 근무자에게 리플렛 배포
- 보수교육시 협회비 납부를 유도·강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, 협회 본부는 지회·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·감독할 것
- 보수교육비용을 등록 회원 및 비등록 회원과 차등하여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·감독할 것

### < 주요 부당 운영 사례 >

- 온·오프라인 보수교육 이수 및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협회 회원 여부, 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하는 방식
- 보수교육 면제 신청 시 회원 여부에 따라 별도 비용 부과
- 타 지부 보수교육 수강 희망 시 별도의 비용이나 절차를 요구 행위
- 보수교육 실시일의 임시 휴일 지정

## (4) 문의 사항

- 보수교육 이수 관련 문의를 전담할 수 있는 협회 내 직통 콜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장함